

의학과 및 간호학과 학사운영 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가톨릭관동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학칙」과 「학칙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학과 및 간호학과 학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입학 및 재입학) 의학과 및 간호학과에 편입한 자의 수업연한 및 재입학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개정 '22.1.18)

- ① 의학과에 편입한 자의 수업연한은 8학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과에서 지정한 선수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이를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16.3.1, '19.9.1)
- ② 간호학과에 편입한 자의 수업연한은 4학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과에서 지정한 선수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이를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19.9.1)
- ③ 의학과와 재입학은 우리 대학교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재입학을 원할 때는 원학년 미만의 입학정원 범위 안에서 여석이 있는 경우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재입학에 관한 사항은 재입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신설 '22.1.18.)

1.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가. 이중 학적으로 제적된 자

나. 재학 연한을 초과하여 제적된 자

다. 징계 처분에 의하여 제적된 자(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

2. 의학과(의예) 1학년, 2학년은 편입학에 의해 충원하며 의학과 1학년(의학3) 이상의 재입학은 학과에서 정한 필기시험 통과 후 재입학을 허가한다.

- 3. 재입학 후 당해 학기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입대 사유를 제외하고는 재입학 후 첫 학기는 일반휴학이 되지 않는다.
- 4. 재입학은 1회에 한해 허용한다.
- 5. 재입학생의 재학 연한은 제적 또는 자원 퇴학 전 재적하였던 재학 기간을 포함하여 우리 대학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 6. 유급, 학사경고는 누적 적용한다.
- 7. 시험에 관한 내용은 의과대학 내규에 따른다.

제3조(휴학) ① 휴학은 매 학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학년 단위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칙」에 따라 직권휴학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학장이 학기 단위로 휴학하게 할 수 있다.

② 휴학 후 복학하려는 자가 교육과정의 개편에 따른 선수과목 이수를 위하여, 휴학한 학년보다 아래 학년으로 복학하는 경우 「학칙 시행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학점단위로 수강할 수 있다. 단, 해당학기 총학점 대비 신청학점의 비율로 계산하여 등록금을 납부한다.(개정 '21.3.1)

[제목변경 및 전문개정 '18.3.1.]

4-1-16~2 의학과 및 간호학과 학사운영 세칙

제4조(유급과 제적) ① 의학과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유급된다.(개정 '16.3.1., '18.3.1., '19.3.1., 24.3.1.)

1. 학년당 전공과목과 학과에서 지정한 교양과목(필수, 선택)의 평균평점이 1.85 미만인 자

2. 제9조의 재시험 결과 성적이 F학점인 자

3. 학년당 전공과목과 학과에서 지정한 교양과목(필수, 선택) 중 3과목 이상 F학점인 자

4. <삭제 '23.2.14>.

② 유급된 자는 해당학년에 재등록을 하여야 하며, B학점 이상 또는 Pass로 취득한 과목을 제외한 전과목을 재수강 하여야 한다. 단, 별도로 정하는 과목은 예외로 한다. 다만, 졸업학년에서 유급한 경우 「학칙 시행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학점단위로 재수강 할 수 있다.(개정 '18.3.1., '19.3.21., '21.3.1., '23.2.14).

③ 재학연한 초과자는 제적으로 처리한다.

④ 2학기에 미등록한 자는 「학칙」에 따른 직권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제적으로 처리한다.(신설 '19.3.1.)

제5조(인정학점) 졸업에 필요한 최소전공 인정학점은 의학과 219학점 이상, 간호학과 99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6조(책임시간) ① 의학과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

② 간호학과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전임교원의 책임시간 및 초과강사료 지급 세칙」 제2조(전임교원의 책임시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1.9.28)

제7조(이수학점) 이수학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8.3.1., '19.9.1)

1. 학년당 의학과 - 55학점, 간호학과 - 40학점 이내

2. < 삭제 '19.9.1 >

제8조(성적평가지기) ① 의학과의 성적평가는 1년 단위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학년말에 시행한다. 다만, 학기 단위로 교육과정이 종료되는 과목의 경우 학기말에 성적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19.3.1., 24.3.1.)

② 간호학과의 성적평가는 학기말에 시행하며, 간호학과 제3, 4학년의 실습성적은 1년 단위로 평가하며 학년말에 이를 시행한다.

[전문개정 '18.3.1.]

제9조(재시험) 의학과의 재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개정 '18.3.1., '19.3.1.)

1. 재시험은 학년의 전공과목과 학과에서 지정한 교양과목 중 2개 이하의 과목이 F학점을 받았을 때에 학년말에 1회 실시한다.

2. 재시험 성적은 최고 D까지 부여할 수 있다.

3. 재시험은 의과대학 행정팀에서 주관한다.

제10조(학년별 수료학점) ① 의학과의 학년 수료학점은 학년마다 38학점이상으로

하며, 본과 4학년은 30학점 이상으로 한다.(개정 '16.5.24.)

② 간호학과와 의학과 학년 수료학점은 학년마다 30학점 이상으로 하며, 4학년은 25학점 이상으로 한다.(개정 '19.9.1.)

제11조(졸업학점) 졸업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다음 각 호 이상으로 한다.

1. 의학과 : 230학점
2. 간호학과 : 135학점(개정 '16.5.24., '19.9.1.)

제12조(졸업종합시험 및 졸업자격) ① 의학과 졸업예정자는 학칙에 따른 졸업요건과 다음 각 호의 평가 및 시험을 모두 통과하여야 졸업자격을 얻는다.(신설'19.3.21.)

1. 졸업자격 임상종합평가
2. 졸업자격 임상실기시험
3. 졸업자격 포트폴리오평가(신설'23.2.14).

② 의학과 수료자는 수료일로부터 3회 이내(군 복무기간 제외)에 한하여 졸업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신설'21.3.1., 개정 '23.2.14)

제13조(내규) 이 세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내규에 따라 운영한다.
(신설 '16. 3. 1., 호변경 '19. 3. 21.)

제14조(준용)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학칙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호변경 '19. 3. 21.)

부 칙

이 세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제2조의 변경된 수업연한과 제10조의 변경된 학년별 수료학점은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교육과정개편에 의하여 과목의 수강학년이 변동되어 유급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학연한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다만, 해당과목만을 재수강하면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재학연한 산정에 포함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제11조의 변경된 학과별 졸업학점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4-1-16~4 의학과 및 간호학과 학사운영 세칙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이전에 휴학한 학생이 2학기에 복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에 한해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9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세칙 제11조의 제2호의 변경된 간호학과 졸업학점은 2017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1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2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3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